

5. 建築士法施行令改正(案)立法豫告

建設部公告 제1992-74호 1992. 6. 25

□ 개정이유 □

건축공사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건축물의 대형화·고층화 추세에 따라 단독건축사사무소에 의한 설계감리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민간부문의 건축공사감리를 강화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를 종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가 여부를 확인”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품질시험 여부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배관형식등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확인,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합성 검토,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서의 적합성 검토, 방수·단열·방습·방음등 주요취약부에 대한 확인등으로 구체화하여 공사감리자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 단독주택·다세대주택등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현장감리를 “수시 또는 필요한 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애매한 감리시기와 방법을 “터파기공사, 기초·외벽·지붕스래브등 주요 구조부의 철근배근 및 조적공사, 단열·방습·방수등 주요 취약부의 공사시”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민원의 중요대상이 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고,

-공사감리방법에 있어 종래 “건축사보”가 공사현장에서 상주 또는 비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조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건축사 또는 건축사 책임하에 건축사보”가 현장감리토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축사의 공사감리 책임을 제고시킴.

나. 건축사 자격시험중 2차시험을 실무위주의 건축설계 측면에 중점을 두고, 현재 2차 시험과목인 “건축계획”의 출제방법을 현행 주관식 및 객관식 혼용방식에서 객관식으로 전환하여 시험부정을 방지함과 아울러 시험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계획”을 1차시험 과목으로 변경함으로써 앞으로 2차시험은 실기과목인 “건축설계”만을 치루도록 함.

다. 건축물의 대형화·고층화 추세에 따라 건축사무소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단독건축사사무소 설계·감리업무범위를 현행 “10층이하로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층이하로서 5천제곱미터 이하)”에서 “15층이하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로 상향조정함.

•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2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 세워서 작성)를 건설부장관(참조:건축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그 주소

자연속의 신도시 꿈이있는 미래도시